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 중 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11
----------	---------

발의연월일: 2020년 2월 일

발 의 자: 이종숙, 강선영, 김용원, 김동협
황동현, 이충현, 경기문, 김현희
정정희, 신낙형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신, 출산, 육아와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재진입을 유도하여 자아실현 및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나.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 여성고용업종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에 대한 시책 추진의무와 우

선고용 추진 노력 의무,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공개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예산편성 및 양성평등기금 사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근거를 규정함.
(안 8조)

아.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자. 부칙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제2항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나. 협조부서: 가족정책과

다. 입법예고: 2020. 2. 예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운영되는 교육 및 각종 지원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4조에 의한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와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에 의한 실태조사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편성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양성평등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상임위원회 제출) 구청장은 제3조제5항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방법 등) 제6조의 사업은 양성평등 조례에 의해 구성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한다.